

객원교수 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객원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객원교수는 교계와 국내외 저명한 학자, 본교의 학과 및 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과 탁월성 있는 분들 중에서 본교에서 강의, 특별임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춘 분 중에서 출연기관의 기부금으로 인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

- ① 객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조교수 이상의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- ② 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의 특수한 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각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학과장이 학과회의 등으로 거쳐서 정해진 교과목으로 정한다.

제4조(임용절차)

객원교수는 해당 학과장(필요한 경우 대학원장 및 신학대학원장)의 추천 또는 부속·부설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

- ①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계약 임용하고, 재계약시는 2년 이상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출연기관에 의해 기부금으로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은 출연조건에 따른다.
-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6조(임무)

객원교수는 주당 최대 9시간 이내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논문지도, 학생지도, 특별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)

객원교수의 강의료는 본교의 강의료 책정기준에 따라 임용 계약에 의거 정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출연기관에 의해 기부금으로 임용된 자의 처우도 출연조건에 따른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 본교 관련 제규정, 임용계약의 조건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